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9. 27 (금)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10. 19(목)

다. 상정일자 : 2006. 10. 19(목) 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9) : 상정, 개요설명, 검토
보고, 심사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
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20) : 심사

-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
사업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23) : 심사, 계수조정, 심사
보고서 채택

-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스포츠사업단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가. 제안이유

○ 2006년도 당초 및 1회추경예산 성립 이후 내시된 변경사업비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추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
및 필수경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
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2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8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42억 3,800만원이 증액된 7,759억 6,8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 2,400만원이 증액된 564억 9,600만원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22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13억 4,8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449억 5,000만원이며, 지방채(국내차입금)는 250억원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2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52억 3,600만원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이 △9억 800만원, 사업예산이 5,963억 2,900만원, 예비비등 기타 △11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800만원, 사업예산이 40억 1,500만원, 예비비등 기타 2,700만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함경호]

가.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2006년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합	계	832,464	100	234,202	598,261	255.4
일	반 회 계	775,967	93.2	181,730	594,237	326.9
특 별 회 계	상수도공기업	7,683	0.9	7,683	0	0
	소 계	48,812	5.8	44,788	4,023	8.9
	주택사업	547	0.1	547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250	0.1	1,250	0	0
	의료보호기금	493	0.1	439	54	12.3
	기초생활 보장기금	1,477	0.1	1,477	0	0
	수질개선	37,590	4.5	31,860	5,729	17.9
	공유재산관리	7,453	0.8	9,213	△1,760	△19.1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8,32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42억 200만원(255.4%)이 증액되었으며
 - 이중 일반회계는 7,759억 6,700만원으로 1,817억 3,000만원(326.9%)이
 - 특별회계는 524억 7,200만원으로 40억 2,372만원(7.6%)이 각각 증가하였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93.2%이고, 특별회계는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나. 일반회계 예산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2006년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계	775,967	100	181,730	594,237	326.9	
자체수입	소계	33,305	4.2	30,595	2,710	8.8
	지방세	13,582	1.7	13,082	500	3.8
	세외수입	19,723	2.5	17,513	2,210	12.6
의존수입	소계	717,661	92.4	151,133	566,528	374.8
	지방교부세	115,146	14.8	93,798	21,348	22.7
	재정보전금	6,080	0.7	5,850	230	3.9
	국·도비보조금	596,435	76.8	51,485	544,949	105.8
지방채	25,000	3.2		25,000	-	

-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7,759억 6,700만원으로 기정대비 326.9%인 5,94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자체수입은 333억 500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이 135억 8,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97억 2,300만원임
 -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6.2%인 7,176억 6,700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1,151억 4,600만원(13.8%),
재정보전금 60억 8,000만원(0.7%),
보조금 5,964억 3,500만원(71.6)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2회 추경예산이 급격히 증가된 것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 25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2006년 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3,582	100	13,083	500	3.8
보 통 세	12,590	92.6	12,091	500	4.1
목 적 세	692	5.2	692	-	-
지난연도수입	300	2.2	300	-	-

-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8%인 5억원이 증가된 135억 8,200만원으로

- 보통세중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주행세는 변동이 없으며 담배소비세가 5억원인 4.1% 증액되었고
- 목적세와 지난연도수입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②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9,723	100	17,513	2,210	0.1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소 계	8,111	41.1	6,219	1,892	0.3
	재산임대	226	1.1	226	0	-
	사 용 료	355	1.7	355	0	-
	수 수 료	1,463	7.4	1,443	20	0.01
	사 업	1,598	8.1	1,586	12	0.01
	장수교부금	946	4.7	946	0	-
	이 자	3,520	17.8	1,660	1,860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소 계	11,612	58.9	11,294	317	0.02
	재산매각	90	0.4	7	83	11.8
	순세계잉여금	9,809	49.7	9,809	0	-
	이 월 금	542	2.7	475	67	0.14
	부 담 금	250	1.2	250	0	-
	잡 수 입	893	4.5	727	166	0.2
	지난연도수입	25	0.1	26	0	-

-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97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6%인 2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 2,000만원, 사업수입 1,200만원, 이자수입 18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됨
 -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8,300만원, 이월금 6,700만원 잡수입이 1억 6,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타 세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계	115,146	14.8	92,798	21,348	22.8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보통교부세는 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 분권교부세 405만원,
 -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09억 3,800만원을 각각 증가하였음

④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계	6,080	0.8	5,850	230	3.9

- 재정보전금의 총규모는 60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주요증가요인으로는

- 제3회 대한해동검도대회 지원 3,000만원
- 대관정 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
- 거문리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임.

⑤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96,435	76.9	51,485	544,949	1,058.5
국고보조금	소 계	541,836	39,749	502,086	1,263.1
	국고보조금	523,046	20,959	502,086	2,395.1
	국가균형특별회계	18,448	18,448	0	-
	기 금	341	341	0	-
시·도비보조금	54,598	7.0	11,736	42,862	365.2

-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총 규모는 5,418억 3,600만원으로 기정대비 1,263.1%인 5,02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5,020억 8,600만원이 증가 되었음.
- 시·도비 보조금은 총 545억 9,800만원으로 기정대비 365.2%인 42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 주요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도 및 도비보조금 주요사업 내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내시액	소관부서
국	재난지원금	53,359	
	소하천수해복구	146,431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57,843	
	소방방재청기타 수해복구	211	
	수리시설 수해복구	48,050	
비	임도 수해복구	2,270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	8,558	

구분	사 업 명	내시액	소관부서
국 비	군도수해복구	71,505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25,580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75,520	
	체육시설 수해복구	574	
	문화관광기타 수해복구	205	
	상수도 수해복구	6,548	
	하수도 수해복구	2,848	
	쓰레기 처리	2,695	
도 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105	
	제8회 효석문화재	20	
	동계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	146	
	재난지원금	1,388	
	소하천수해복구	10,419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4,115	
	수리시설 수해복구	3,373	
	임도수해복구	161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	609	
	군도수해복구	5,088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820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2,531	
	체육시설 수해복구	40	
	상수도수해복구	465	
	하수도수해복구	202	
	피해주택 이재민 전월세	372	
	피해주택 컨테이너 보급	236	
	응급복구비	450	
	농업시설 피해복구	905	
	제외농업시설 피해복구	69	
무허가축사 피해복구	71		

- 특히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과 도의 지원 재원으로
 - 7.15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보조로 인해 우리군의 전체 세입에 76.9%를 점하고 있는 것을 감안
 - 향후 집행기관의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구상으로 사업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⑥ 지방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국내차입금	25,000	3.2	-	25,000	-

- 지방채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군비부담금 250억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것임

2)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775,967	100	181,730	594,237	326.98	
경상예산	소 계	45,502	5.86	46,410	△907	△1.95
	인 건 비	25,373	3.26	25,052	320	1.28
	경상적경비	20,129	2.59	21,357	△1,228	△5.74
사업예산	소 계	720,191	92.81	123,863	596,328	481.44
	보 조 사 업	673,013	86.73	75,749	597,263	788.47
	자 체 사 업	47,178	6.07	48,114	△935	△1.94
채무상환	소 계	477	0.06	477	-	-
	지방채상환	477	0.06	477	-	-
	채 무 부 담 행 위 상 환	-	-	0	-	-
예비비등	소 계	9,796	1.26	10,979	△1,182	△10.77
	예 비 비	2,052	0.26	2,052	0	-
	기 타	7,744	0.99	8,926	△1,182	△13.24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759억 6,7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대비 326.98%인 5,94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28%,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788.47% 증가하였고
 -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가 5.74%,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1.94%
예비비 및 기타비용 중 기타비용이 13.2%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 이번 제2회추경에서는 사업예산이 481.44%인 5,963억 2,800만원이
증가한 7,201억 9,100만원으로 총예산의 9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7.15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5,962억 5,053만원으로
신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그 외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신활력사업 지역혁신의회 운영사업에 5,000만원
 - 진부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6,000만원
 - 2006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1억 500만원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2,450만원
 - 200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 작성사업 5,600만원
 - 재활용창고 신축 3억 5,310만원
 - 제3회 대한해동검도대회 지원사업 3,000만원
 - 대관정 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
 - 2014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정비사업
2억 9,350만원 등임.

①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775,967	100	181,730	594,237	326.9
일반행정비	소 계	40,637	5.2	42,168	△1,530	△3.6
	입법및선거관리	1,130	0.1	1,168	△38	△3.2
	일반행정비	39,506	5.0	40,999	△1,492	△3.6
사회개발비	소 계	95,522	12.3	68,453	27,069	39.5
	교육 및 문화	14,796	1.9	14,414	382	2.6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32,672	4.8	23,616	14,056	59.5
	사회보장비	17,176	2.2	16,882	294	1.7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25,877	3.3	13,540	12,366	91.1
경제개발비	소 계	636,550	82.0	68,233	568,617	837.0
	농수산개발비	85,284	10.9	27,726	57,558	207.5
	지역경제개발비	4,371	0.5	4,265	406	10.2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545,332	70.2	34,741	510,591	1469.7
	교통관리비	1,561	7.9	17,475	60	0.03
민방위비	소 계	181	0.9	171	10	0.05
	민방위관리비	181	0.9	171	10	0.05
지원 및 기타 경비	소 계	3076	15.5	3,004	71	0.02
	지방채상환	477	2.4	477	0	0
	제 지 출 금	546	2.7	475	71	0.1
	예 비 비	2,052	10.4	2,052	0	0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82.0%)와 사회개발비(12.3%)가 전체 예산의 94.3%를 차지하고 있고

각 장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먼저 **일반행정비**는

- 원어민 교사확대지원 사업 1억 500만원
진부면 청사수해복구(공제금)사업 1억 7,688만원 등이 있고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원은 삭감하였음

-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 200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사업 5,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 9,614만원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26억 8,625만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1억원
7월 호우피해주택 이재민 컨테이너집 보급 1억 7,150만원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이설 공사 20억원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 공사 8억 6,340만원
제3회 해동검도대회 지원 3,00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 6억 5,638만원
대관정 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
2014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 2억 9,350만원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74억 3,300만원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30억 3,462만원
마을(소규모) 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 2,700만원 등이 있으며

- **경제개발비**는

- 진부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6,000만원
수항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복구 9,010만원
흥정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복구 1억 4,407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 20억 5,920만원
사방댐 수해복구 사업 7억 5,300만원
임도 수해복구 사업 26억 3,300만원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513억 3,246만원
7월 집중호우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232억 4,638만원
군도수해복구 사업 781억 4,700만원

7월 호우피해주택 이재민 전월세 지원 사업 3억 7,260만원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 2억 4,100만원
 집단이주사업 97억 5,260만원
 수해응급복구비 25억 3,512만원
 7월 집중호우 수해피해재난지원금 562억 8,900만원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1억 2,53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 민방위비는

·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 등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인 국고보조금 반환 5,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75만원이 편성 되었음.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각 기능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증감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6,496	100	52,472	4,023	7.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83	13.5	7,683	0	0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48,812	44,788	4,023	8.9
	주택사업	547	547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50	1,250	0	0
	의료보호기금	493	439	54	12.3
	기초생활보장	1,477	1,477	0	0
	수질개선	37,590	31,860	5,729	17.9
	공유재산관리	7,453	9,213	△1,760	△19.1

-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0억 2,300만원이 증액된 564억 9,600만원으로 7.6%가 증가되었음
 - 이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 인건비 3,500만원, 진부취수장 발전기 설치 1,000만원, 대화정수장 전기분전반 교체 500만원, 주진가압장 공기변 설치사업 1,000만원, 정수장 유량계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3,500만원,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 3,0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3,300만원, 의료급여사업에 2,112만원이 증가되었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 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연가보상비에 7,100만원,
 - 대화, 진부, 도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54억 7,000만원
 -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감리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 공유재산집단화 사업비 17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해 감액하였음

라. 검토결과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감액과 사업비 집행예상 잔액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 57억 7,000만원의 감액한 실행예산을 편성 긴축재정을 운용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나
-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부 감액한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감액 현황 : 붙임

-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 발행되는 지방채 250억원과 관련하여
 - 기존의 채무 78억을 포함한 총 328억원의 채무는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주요한 심의 사항을 감안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자료와 내역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이 아닌 총액편성으로 상세 내역 확인이 어려운 바 소관별 예산 심의시 별도의 보충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켜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사회개발비에

-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 공사 8억 6,340만원
-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74억 3,300만원
-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30억 3462만원

- 경제개발비에

-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513억 3,246만원

- 하천·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2,232억 4,638만원
 - 군도 수해복구 사업 781억 4,700만원
 -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562억 8,900만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있고
 -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 20억 5,920만원,
 - 사방댐 수해복구 사업 7억 5,300만원,
 - 임도수해복구사업 26억 3,300만원 」
- 기타 부분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제를 들은 것이 있고 안들은 것이 있는가?	○ 예전 새마을 등 구건물외에는 모두 들었음.
○ 담배소비세 증가 이유 ?	○ 담배 가격의 상승분임
○ 진부면 대회의실 정비비 삭감 사유는 ?	○ 수해로 인해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이 수해를 입어 입어 주민들을 고려 반납한 사항임
○ 지역혁신체계 과목경정 사유는?	○ 보상금을 줄 수 없어 운영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임
○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인가 ?	○ 수해피해를 입은 곳에 설치할 계획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베민속 육성지원사업 사용 용도는 ? ○ 기초생활보장조사는 언제 하였는가 ? ○ 산사태 복구와 관련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림면 삼베민속놀이에 대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지난 9월 실시하였음. ○ 있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 사 결 과

가. 일반회계 : 원안가결

나. 특별회계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 수해복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정실시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필수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삭감 편성한 사업중 일부는 추진의 시기 일실로 인해 상반기에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이 미뤄지다 수해복구비 확보를 빌미로 삭감된 것으로 비춰지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임

- 다. 수해복구 조사 누락으로 인해 군비로 복구하는 사업 추진은 지방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안겨 준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라. 지방해 발행과 관련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 조기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조서 1부. 끝.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 결 조 서

▣ 예산총칙

- 제1조 : 변동사항 없음
- 제2조 : 변동사항 없음
- 제3조 : 변동사항 없음
- 제4조 : 변동사항 없음
- 제5조 : 변동사항 없음
- 제6조 : 변동사항 없음
- 제7조 : 변동사항 없음

예 산 총 규 모

200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총 계	832,464,059	234,202,576	598,261,483
일 반 회 계	775,967,987	181,730,230	594,237,757
특 별 회 계	56,496,072	52,472,346	4,023,726
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683,680	7,683,680	0
기 타 특 별 회 계	48,812,392	44,788,666	4,023,726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547,001	547,001	0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493,448	439,323	54,125
기 초 생 활 보 장 기 금 특 별 회 계	1,477,958	1,477,958	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	1,250,010	1,250,010	0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7,590,309	31,860,708	5,729,601
공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7,453,666	9,213,666	△1,760,000

세입·세출예산총괄표

【 경제성질별 】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비율 %	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세	계	832,464,059	100	234,202,576	100	598,261,483	775,967,987	100	181,730,230	100	594,237,757	56,496,072	100	52,472,346	100	4,023,726
	지방세수입	13,582,828	2	13,082,828	6	500,000	13,582,828	2	13,082,828	7	500,000	0	0	0	0	0
	세외수입	41,839,796	5	40,841,678	17	998,118	19,723,259	3	17,513,167	10	2,210,092	22,116,537	39	23,328,511	44	△1,211,974
	경상적세외수입	12,374,813	5	10,482,654	4	1,892,159	8,111,166	1	6,219,007	3	1,892,159	4,263,647	8	4,263,647	8	0
	임시적세외수입	29,464,983	4	30,359,024	13	△894,041	11,612,093	1	11,294,160	6	317,933	17,852,890	32	19,064,864	36	△1,211,974
	지방교부세	115,146,882	14	93,798,830	40	21,348,052	115,146,882	15	93,798,830	52	21,348,052	0	0	0	0	0
	지방양여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정보전금	6,080,000	1	5,850,000	45	230,000	6,080,000	1	5,850,000	45	230,000	0	0	0	0	0
	보조금	630,814,553	76	80,629,240	34	550,185,313	596,435,018	77	51,485,405	28	544,949,613	34,379,535	61	29,143,835	56	5,235,700
	국고보조금	576,200,095	69	68,880,705	29	507,319,390	541,836,310	70	39,749,320	22	502,086,990	34,363,785	61	29,131,385	56	5,232,400
	도비보조금	54,614,458	7	11,748,535	5	42,865,923	54,598,708	7	11,736,085	6	42,862,623	15,750	0	12,450	0	3,300
	지방채	25,000,000	3	0	0	25,000,000	25,000,000	3	0	0	25,000,000	0	0	0	0	0
	국내차입금	25,000,000	60	0	0	25,000,000	25,000,000	127	0	0	25,000,000	0	0	0	0	0
입	계	832,464,059	100	234,202,576	100	598,261,483	775,967,987	100	181,730,230	100	594,237,757	56,496,072	100	52,472,346	100	4,023,726
세	인건비	27,875,979	3	27,572,988	12	302,991	25,373,591	3	25,052,746	14	320,845	2,502,388	4	2,520,242	5	△17,854
	울건비	18,722,640	2	16,460,804	7	2,261,836	17,505,080	2	15,243,244	8	2,261,836	1,217,560	2	1,217,560	2	0
	이전경비	95,573,840	11	36,752,703	16	58,821,137	94,424,920	12	35,657,908	20	58,767,012	1,148,920	2	1,094,795	2	54,125
	자본지출	680,427,574	82	142,396,761	61	538,030,813	632,015,206	81	97,944,393	54	534,070,813	48,412,368	86	44,452,368	85	3,960,000
	용자및출자	1,532,155	0	1,532,155	1	0	0	0	0	0	1,532,155	3	1,532,155	3	0	
	보전재원	2,059,726	0	2,059,726	1	0	431,410	0	431,410	0	0	1,628,316	3	1,628,316	3	0
	내부거래	3,618,617	0	4,873,116	2	△1,254,499	3,618,617	0	4,873,116	3	△1,254,499	0	0	0	0	0
	예비비및기타	2,653,528	3	2,554,323	1	99,205	2,599,163	0	2,527,413	1	71,750	54,365	0	26,910	0	27,455
출	계	832,464,059	100	234,202,576	100	598,261,483	775,967,987	100	181,730,230	100	594,237,757	56,496,072	100	52,472,346	100	4,023,726

세입·세출예산총괄표

【 세 세 항 표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 산 액	구 성 비 율 %	기 정 예 산 액	구 성 비 율 %	증 △ 감	예 산 액	구 성 비 율 %	기 정 예 산 액	구 성 비 율 %	증 △ 감	예 산 액	구 성 비 율 %	기 정 예 산 액	구 성 비 율 %	증 △ 감
계	832,464,059	100	234,202,576	100	598,261,483	775,967,987	100	181,730,230	100	594,237,757	56,496,072	100	52,472,346	100	4,023,726
경 상 예 산	48,805,580	6	49,731,145	21	△925,565	45,502,779	6	46,410,490	26	△907,711	3,302,801	6	3,320,655	6	△17,854
인 건 비	27,875,979	3	27,572,988	12	302,991	25,373,591	3	25,052,746	14	320,845	2,502,388	4	2,520,242	5	△17,854
경 상 적 경 비	20,929,601	3	22,158,157	12	△1,228,556	20,129,188	3	21,357,744	12	△1,228,556	800,413	1	800,413	2	0
사 업 예 산	771,130,602	93	170,788,260	73	600,342,342	720,191,868	93	123,863,651	68	596,328,217	50,938,734	90	46,924,609	89	4,014,125
보 조 사 업	709,969,174	85	106,952,216	46	603,016,958	673,013,357	87	75,749,399	42	597,263,958	36,955,817	65	31,202,817	59	5,753,000
자 체 사 업	61,161,428	7	63,836,044	27	△2,674,616	47,178,511	6	48,114,252	26	△935,741	13,982,917	25	15,721,792	30	△1,738,875
채 무 상 환	2,677,247	0	2,677,247	1	0	477,075	0	477,075	0	0	2,200,172	4	2,200,172	4	0
지방채상환	2,677,247	0	2,677,247	1	0	477,075	0	477,075	0	0	2,200,172	4	2,200,172	4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등	9,850,630	1	11,005,924	5	△1,155,294	9,796,265	1	10,979,014	6	△1,182,749	54,365	0	26,910	0	27,455
예 비 비	2,052,219	0	2,052,219	1	0	2,052,219	0	2,052,219	1	0	0	0	0	0	0
기 타	7,798,411	1	8,953,705	4	△1,155,294	7,744,046	1	8,926,795	5	△1,182,749	54,365	0	26,910	0	27,455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7
----------	----

제출년월일 : 2006.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당초 및 1회추경예산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책추진재정보전사업,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집행잔액반납,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일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추진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

2. 주 요 골 자

가.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2,46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8,26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4,238백만원이 증액된 775,968백만원, 특별회계는 4,024백만원이 증액된 56,496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500백만원, 세외수입 2,210백만원, 지방교부세 21,348백만원, 재정보전금 23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44,950백만원이며, 지방채(국내차입금) 25,0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1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236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908백만원, 사업예산 596,329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1,18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8백만원, 사업예산 4,015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27백만원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